

춘천지방법원 2022. 9. 21 선고 2022가단100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1. 2. 22. 접수 제80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,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정수영

별지